

# 산업별 경쟁촉진대책 (발취)

## —경제자유화 및 경쟁촉진대책반—

### I. 추진경위

#### 1. 정부규제 완화의 필요성

- 그동안 우리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불가안정,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국민보건위생 등 각종 정책목적에 의하여 국민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불가피

〈법령에 의한 경제분야 정부규제의 예시〉

(업종수)

참 규 제	가 격 규 제	설 비 규 제	지 역 제 한	개 별 사 업 의 승 인	형 식 · 품 질 승 인	기 타
84	26	10	8	20	41	49

〈註〉: 89개업종 (54개 법률)에 대한 사례조사

- 이러한 정부규제와 개입은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으나, 경제규모확대와 민간경영능력신장등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가운데 많은 부분이 민간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민경제전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최근 우리경제의 자율화·개방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특정업계를 보호하고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던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절실

- 이와같은 기본인식 아래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의 창달과 대외개방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경쟁제한적인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를 추진

—우선 88년부터 경쟁제한요인이 많은 11개 주요 산업에 대하여 參入제한, 가격규제 등 정부규제의 존속이 타당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

#### 2.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의 기대효과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창달에 기여
  - 경제제한요인의 해소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대외개방에 효율적 대응
  - 민간기업간의 경쟁체제확립으로 과거 정부지원에의 의존성향에서 벗어나 기업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 나이가 기술혁신에의 노력을 유도
- 아울러 물가의 구조적 안정 및 대외경쟁력 향상에 도움
- 신규參入확대 및 설비 신·증설제한의 완화로 생산적 투자를 유도
- 배분의 형평성 실현
- 各 경제주체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평한 배분도
- 소비자선택의 자유확대에 따른 후생증대

3. 추진경위

- 경쟁촉진대상산업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88.4)
- 국민경제상 비중이 크고 경쟁제한요인이 많은 23개 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실태조사
- '88년중 추진할 11개산업 선정('88. 5)
- 연탄, 주류, 의약품, 농약, 배합사료, 콩관련식품, 제분, 정보통신, 정유, 화물자동차운송, 농기계
- 산업별 연구분석을 위하여 학계전문가와 공동작업반 구성('88.7)
- 농기계산업은 농기계가격자율화등 경쟁촉진대책을 '88년중에 수립완료함에 따라 10개산업을 대상산업으로 함.

- 산업별 공청회(KDI 정책협의회) 개최('88.11~12)
- 학계, 민간업계,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 경제 현안과제해결을 위한 12개 특별대책반중의 하나로서 경제기획원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경제자유화 및 경쟁촉진대책반」을 구성('89. 1)하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계획의 수립 추진
- 공정거래차원의 주요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대책수립을 위하여 「경쟁촉진부문대책반」 구성
- 「경쟁촉진부문대책반」 1차회의('89.1.20)
- 각부처로부터 소관산업별 경쟁촉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제출받음(2.9~3.7)
- 산업별 경쟁촉진대책에 대하여 각부처별로 협의 및 조정(3.20~4.14)
- 「경쟁촉진부문대책반」(반장 : 공정거래실장)에서 최종 실무협의(5.13)

II. 향후추진계획

- 「경제자유화 및 경쟁촉진대책반」(반장 : 경제기획원 차관)에 상정 확정(5.26)
- 대통령 보고(5월말)

<10개 산업별 경쟁촉진시책의 주요내용>

주요 경쟁 촉진 시책	
1. 연 탄	연탄공급구역제한 완화(93년 폐지), 연탄제조업 허가제 완화, 연탄품질 및 규격의 다양화
2. 주 류	용기, 포장, 표시 등에 대한 규제완화(89년 상반기중), 소주 自道酒 수입의무제도개선, 주류도매업 신 규면허의 단계적인 허용 확대등
3. 精 油	精油業 시설개조허가제 폐지(89년중)등 허가제 완화, 주유소 거리제한완화(89.3)등 유통구조개선, 유가관리제도개선, 수출입부문 규제완화
4. 농 약	농약제조업 허가제 완화(93년 폐지), 농약수입업허가제완화(92년 폐지), 농약완제품 수입허용(93년 완전개방), 고유상표사용 제한 폐지(92년중)
5. 배 합 사 료	飼料工業新設 許可制 廢止(91년), 飼料穀料의 輸入쿼타制 緩和
6. 콩 식 품	大豆粕 수입제한 폐지(91년), 대두유·대두박 제조업의 허가제 폐지
7. 제 분	소맥수입쿼타제 폐지(90년), 제분시설변경등의 승인제 완화, 제분업허가제의 단계적 완화
8. 의 약 품	의약품 수입추진제 완화(88. 12), 표준소매가제도 개선(91년 실시)
9. 화물자동차운송	사업구역제한 완화, 구역화물운송사업의 허가제 완화(93년), 노선화물운송규제 개선
10. 정 보 통 신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참입제한 완화,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사업영역 규제완화, 통신회선의 사용제한 완화

- 확정된 경쟁촉진대책은 각부처별로 홍보
- 경쟁촉진대책의 구체적인 실천상황 점검을 위하여 「경쟁촉진부문대책반」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
-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시책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

〈參考〉 '89년중에 신규로 수립할 경쟁촉진대책 추진일정

- 이미 추진한 10개산업에 이어서 '89년중에도 10개내 외의 산업에 대하여 경쟁촉진시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
  - 대상산업확정 및 공동작업반 구성(6월중)
  - 일부산업에 대한 1차 공청회 개최(6월중)
  - 부처간 실무협의(8월중)
  - 나머지 산업에 대한 2차 공청회 개최(9월중)
  - 부처별로 소관산업의 추진계획 작성(10월중)

### Ⅲ. 산업별 경쟁촉진대책

#### 1. 연탄산업

##### (1) 연탄공급구역제한의 완화

- 연탄공급구역제도는 '73년 제1차 石油波動의 여파로 연탄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제한된 물량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배분·공급하기 위하여 시행
- 최근 연탄소비감소등 석탄수급상황의 호전으로 공급구역제도가 「소비자보호보다는 기업보호」 목적으로 변질된데다 일부 독과점 공급구역에서는 제품선택제한에 대한 소비자불만 야기
- 이에 따라 종전 63개 공급구역을 23개 구역으로 광역화('89.4.25 동자부고시개정, 5.15 시행)
  - 독점공급구역은 인접구역과 통합
  - 가격이 인접구역과 평준화된 지역은 공동공급구역화
- 공급구역의 일시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계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급구역을 폐지할 방침
  - 전국을 8~10개 圏域으로 구분하여 道單位로 광역화(91년중)
  - 공급구역제한을 전면 폐지(93년중)

- 공급구역제한의 완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연탄제조업간의 경쟁촉진으로 품질향상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고 업계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 연탄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현행 석탄산업법상 연탄제조업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규참입제한에 따라 기존 사업양도에 있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등 부작용 상존
- 앞으로 석탄산업법 개정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신규참입제한을 완화
- 연탄산업이 사양화추세에 있어 많은 신규참입은 예상되지 않으나, 실효성이 없는 정부규제의 존속에 대한 민간의 불만해소 기대가능

##### (3) 연탄최고가가격제의 폐지

- 연탄은 국민생활필품으로 1號炭(3.6 kg)에 대하여 최고가격제를 실시
- 공급구역제한의 철폐없이 최고가격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의 연탄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93년 공급구역제한 철폐후 최고가격제 폐지를 검토

##### (4) 연탄품질 및 규격의 다양화

- 현재 연탄의 종류를 5개 유형으로 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기존 5개규격외에 소비자에게 편리한 품질좋은 신규 연탄을 보급하기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90년중에 추진

#### 2. 정유산업

-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가격 및 이윤, 新·增設, 신규참입, 수출입, 유통등 거의 전분야에 걸쳐서 석유사업법을 근간으로 하여 정부가 직접 규제
- 경쟁촉진대책

개 선 과 제	실 적 또는 추 진 계 획	기 대 효 과
<p>[石油精製業 허가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개조허가제 폐지</li> <li>• 증설허가제폐지 및 신규참입 자유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년 시행 실시</li> <li>• 단계적추진(90년 이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精油社의 자율경영확대</li> <li>• 수요변동에 따른 적기공급</li> <li>• 수요추세에 따른 적기투자유도</li> <li>• 자원의 적정배분</li> <li>• 산업구조의 왜곡 해소</li> </ul>
<p>[流通構造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li> <li>• 석유판매업규제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년 3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1km → 700m</li> </ul> </li> <li>• 90년 이후 단계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점판매지역제한 폐지</li> <li>· 주유소의 정유사와 직거래제 도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소간 경쟁효과(서비스등) 소비자에게 전달</li> <li>• 거래의 자유화로 가격경쟁유도 및 소비자 혜택</li> </ul>
<p>[油價管理制度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프타가격의 자율화</li> <li>• 국내油價를 국제油價에 연동하여 고시</li> <li>• 소비자 告示制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년 3월 실시</li> <li>• 90년 이후 실시</li> <li>• 90년 이후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石油化學製品의 경쟁촉진 및 적정가격유지</li> <li>• 유종간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 현상 해소(국제가에 비해 경질유는 높고 중질유는 낮음)</li> <li>• 石油化學製品 생산에 과다투자 방지</li> <li>• 최고가격지정폐지로 소비자의이익증가</li> </ul>
<p>[石油수출입부문 자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石油추천대상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석유정제업자외에 부산물인 石油製品의 생산자추가</li> </ul> </li> <li>• 수입추천대상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石油精製業者외에 대량 수요처 및 정유사 공급 수출입업자 추가</li> </ul> </li> <li>• 나프타 및 윤활기유 수출입의 자유화</li> <li>• 수출허용요건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상 지장이 없고 제품간 수급불균형시라는 요건을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완화</li> </ul> </li> <li>• 임가공원유 및 현물도입승인제의 폐지</li> <li>• 분기별 수입계획 신고제 폐지</li> <li>• 原油도입 및 수출추천제, 수입추과제는 단계적으로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9년 상반기</li> <li>• 89년 상반기</li> <li>• 89년 상반기</li> <li>• 89년 상반기</li> <li>• 89년 실시</li> <li>• 89년 실시</li> <li>• 90년 이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石油화학분야(나프타)의 수급 애로 타개</li> <li>• 경쟁여건 기반조성으로 石油類製品 수급 원활</li> <li>• 가격안정화에 기여 및 생산의욕 고취</li> <li>• 불필요한 요건의 정비로 행정절차 간소화</li> <li>• 석유류의 수급안정에 기여</li> <li>• 적기에 싼 값으로 도입</li> <li>•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로 업계의 자율성, 신속성 확보</li> <li>• 정유산업의 실질적 자유화 기대</li> </ul>